● 경기주택도시공사정관

제정 1997. 12. 1. 정관 제 1호
개정 1998. 2. 13. 정관 제 2호
개정 1998. 8. 17. 정관 제 3호
개정 1998. 8. 31. 정관 제 4호
개정 1998. 10 .31. 정관 제 5호
개정 1998. 12. 1. 정관 제 6호
개정 1999. 8. 26. 정관 제 7호
(전면)개정 1999. 11. 11. 정관 제 8호
개정 2000. 3. 31. 정관 제 9호
개정 2000. 9. 28. 정관 제10호
개정 2002. 1. 2. 정관 제11호
개정 2002. 2. 4. 정관 제12호
개정 2002. 12. 4. 정관 제13호
개정 2003. 1 . 2. 정관 제14호
개정 2003. 3. 13. 정관 제15호
개정 2004. 1. 13. 정관 제16호
개정 2004. 3. 4. 정관 제17호
개정 2004. 7. 7. 정관 제18호
개정 2004. 11. 2. 정관 제19호
개정 2005. 1. 5. 정관 제20호
개정 2005. 4. 6. 정관 제21호
개정 2005. 8. 18. 정관 제22호
개정 2006. 3. 20. 정관 제23호
개정 2006. 9. 19. 정관 제24호
개정 2007. 2. 2. 정관 제25호
개정 2007. 9. 28. 정관 제26호
개정 2007. 12 . 3. 정관 제27호
개정 2008. 11. 11. 정관 제28호
개정 2008. 12. 18. 정관 제29호
개정 2009. 2. 2. 정관 제30호
개정 2009. 5. 28. 정관 제31호
개정 2009. 7. 1. 정관 제32호
개정 2010. 1. 25. 정관 제33호
개정 2010. 3. 31. 정관 제34호
개정 2010. 7. 27. 정관 제35호
개정 2010. 10. 13. 정관 제36호
개정 2011. 9. 1. 정관 제37호
개정 2011. 11. 28. 정관 제38호
개정 2012. 12. 5. 정관 제39호
개정 2013. 6. 21. 정관 제40호
개정 2013. 11. 29. 정관 제41호
개정 2014. 5. 2. 정관 제42호
개정 2014. 11. 12. 정관 제43호
개정 2015. 12. 31. 정관 제44호
개정 2016. 8. 3. 정관 제45호
개정 2017. 11. 1. 정관 제46호
개정 2019. 3. 29. 정관 제47호
개정 2019. 3. 29. 정관 제48호
개정 2019. 5. 8. 정관 제49호
개정 2019. 8. 26. 정관 제50호
개정 2019. 9. 27. 정관 제51호
개정 2020. 7. 28. 정관 제52호
개정 2021. 1. 20. 정관 제53호
개정 2021. 7. 30. 정관 제54호
개정 2022. 1. 27. 정관 제55호
개정 2022. 6. 3. 정관 제56호
개정 2022. 8. 1. 정관 제57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4.7.7, 07.12.3, 11.9.1, 20.7.28>

제2조(명칭) 이 공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약호 GH, "GH공사")라 표기한다. <개정 04.3.4, 07.12.3, 20.7.28>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수원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공사가 공고할 사항은 도의 도보 또는 도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시공고로 할 수 있다.

제5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 및 공급·임대관리 <개정 07.12.3>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 · 개량 · 공급 · 임대 및 관리
3. 도시재정비 사업 및 리모델링 사업 <개정 11.11.28>
4. 관광지 · 리조트 등 위락단지의 조성 및 관리
5. 도로 · 도시철도, 주차장 등 교통관련시설의 건설 및 운영 · 유지관리 <개정 03.3.13>
6. 해외무역, 외자유치, 과학기술진흥 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개정 10.1.25>
7.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8.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10.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1. 제1호 내지 7호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11.11.28>
12.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다만, 비투자사업에 한한다. <신설 16.8.3>
13. 그 밖의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 등 <개정 10.1.25, 20.7.28>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일부를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출자할 수 있다. <개정 05.4.6>

제6조(설립등기) 공사는 설립인가를 받고 자본금의 납입이 있은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 2 장 주 식

제7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천주로 한다. <개정 04.11.2, 07.12.3>

제8조(1주의 금액)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9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공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4,879,758주로 하며, 도가 전액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다.

제10조(주식의 종류) ①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출자분에 대하여는 기명식 보통주식을 도 이외의 출자분에 대하여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11조(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공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의 수는 공사의 발행주식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발행할 수 있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년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미배당분은 수년간 누적하여 배당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에 대하여는 주식발행 6년 경과 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공사의 이익에서 강제상환 방법으로 소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가액은 주식 액면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주식상환을 위하여 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도지사의 승인으로 주식상환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주권의 종류) 공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의 7종으로 한다.

제13조(신주인수권) ① 공사의 주주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공모증자를 통한 신주발행 및 도의 출자를 위하여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다.

③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실권주와 단주의 처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4조(주권의 불소지) 도 출자분에 대하여 도의 청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15조(명의개서 등)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절차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주식업무취급규정에 따른다.

제16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을 공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으며, 신고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공사는 매결산기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그 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및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② 공사는 매결산기 종료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일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18조(소집시기) ① 공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9조(소집권자 및 의장)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장이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사장으로 한다.

③ 사장이 유고시에는 제2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04.7.7>

제20조(소집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총회일 2주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21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주주총회의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결의는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②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의 수는 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에 비치한다.

제 4 장 임 원 및 직 원

제25조(임·직원 및 하부조직) ① 공사에 사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상임이사, 비상임이사(노동이사 1명 포함)] 및 1인의 감사를 둔다. <개정 10.1.25, 19.3.29>

②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경영 · 행정 · 기술), 전문직, 연구직, 임기제 전문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04.7.7, 05.8.18, 06.9.19, 07.9.28, 15.12.31, 19.9.27>

③ 공사의 조직은 사장, 감사, 6본부로 하며 정원은 743명으로 한다. <별표 개정 05.4.6, 별표1 개정 07.2.2, 별표개정 07.9.28, 별표1 개정 08.12.18. 09.7.1, 별표2 개정10.3.31, 별표1 개정 10.7.27, 별표2 개정 10.10.13, 별표1 개정 13.11.29, 개정 및 별표 1, 2 삭제 14.11.12, 15.12.31, 19.5.8, 19.9.27, 21.1.20, 22.1.27.>

④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이외의 하부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4.11.12>

제25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신설 10.1.25>

제26조(이사) ① 공사의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02.12.4, 06.9.19>

1. 사장
2. 상임이사(2인)
3. 도 도시주택실장 <개정 08.11.11, 22.6.3>
4. <삭제 09.2.2>
5. 도 기획조정실장 <개정 08.11.11, 22.6.3>
6. 회계 및 세무 등 전문가(비상임)
7. 공사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대표(노동이사) <신설 19.3.29>

② 제1항의 이사 중 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0.1.25>

③ <삭제 05.4.6>

④ 제1항 제2호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고, 제3호 및 제5호의 이사는 당연직이사로 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06.3.20, 06.9.19, 10.1.25>

⑤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노동이사는 위원회 추천에 앞서 근로자 투표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근로자 투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06.3.20, 06.9.19, 19.3.29>

제27조(이사의 임기) ① 사장,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00.3.3.1, 05.4.6, 10.1.25>

②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10.1.25>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임기도 자동으로 종료된다. 임기종료, 사임 등으로 노동이사가 결원이 되거나 노동이사가 연임할 경우에는 근로자투표 등 절차를 거쳐 새로 임명한다. <신설 19.3.29>

제28조(이사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이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해당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05.4.6, 06.9.19>

제29조(감사) ① 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그 임기는 제27조 제1항에 따르고,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04.7.7, 10.1.25>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특별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7.9.28>

③ 감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신설 04.7.7, 개정 10.1.25>

제30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3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02.12.4, 04.7.7, 17.11.1>

1. <삭제 22.8.1.>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삭제 17.11.1>
7.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2호의 사용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노동이사에 한함) <신설 19.3.29>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 한다.

제32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3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도지사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2.12.4>

제34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35조(임·직원의 보수)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보수와 기타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받는다. 다만,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5.8.18, 10.1.25>

제36조(신분보장) 공사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3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그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① 사장은 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직원 중에서 공사업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으로 지명한 임·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02.12.4>

제39조(고문) ①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상임고문 약간명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고문에게는 이사회의 의결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이 사 회

제40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05.4.6>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기타 이사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삭제 05.1.5>
6. 증자, 감자에 관한 사항 <신설 10.1.25>
7.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8.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개정 09.5.28>
9. 자금의 장·단기 차입에 관한 사항 <개정 09.5.28>
10. 외국차관의 도입에 관한 사항 <개정 09.5.28>
11.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09.5.28>
12. 중요사업의 신규참여 및 추진 중인 사업의 주요 변경,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09.5.28>
13.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09.5.28>
14. 자산 재 평가액의 확정
15. 기타 업무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42조(소집 및 의장)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 <개정 10.1.25, 14.5.2>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10.1.25>

제43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4. 조직, 기구, 정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4조(재심요청)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이사회의 회의록)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 무 회 계

제46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47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 년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02.12.4, 07.2.2>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산지침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02.12.4, 10.1.25>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도지사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8조(예산불성립의 예산집행)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49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 년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02.12.4>

② 도지사는 결산결과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0조(회계원칙 등)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를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02.12.4>

제51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신설 14.5.2>
4.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5. 부채상환, 사업 준비 등을 위한 적립

② 공사는 매 사업 년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52조(경비의 부담) ① 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 제2호의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3조(기금의 조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4조(재해보전 적립금) 공사는 관리주택의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할 수 있다.

제55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및 귀속) 공사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는 공사가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시행한다.

제 7 장 사 채 등

제56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 또는 외국차관을 도입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사채발행의 한도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인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1.7.30.>
③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이동 21.7.30.>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
4. 권종별 액면금액
5. 이율
6.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7.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8. 소화방법

④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장이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항이동 21.7.30.>
1. 사채의 번호
2. 발행년월일

3.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

⑤ <삭제 03.1.2> <항이동 21.7.30.>

⑥ 공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전자등록부 계좌에 채권을 전자등록 할 수 있다. <신설 19.8.26> <항이동 21.7.30.>

제57조(차관) 공사는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제58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 차입할 수 있다.

제59조(단기차입금) 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 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년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0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61조(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2조(해산) ① 공사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하지 아니한다.

② 공사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잔여재산은 도에 귀속한다.

제63조(경영평가) ① 공사의 경영평가는 도지사가 연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사장의 임·면과 공사의 업무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4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매 사업 년도 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결산서·재무제표·연도별 경영목표·경영실적의 평가결과·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 연서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5조(사업의 민간위탁)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6조(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사장은 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7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도의 실·국·원·소와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제68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수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도지사의 공인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경기도 공인조례에 준하여 비치·사용할 수 있다.

제69조(주주총회의 구성) 도 이외의 출자자가 없을 경우 주주총회는 구성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주주총회의 권한은 이사회가 대행한다. <신설 07.2.2>

제70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정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 이동 07.2.2>

부 칙<97.12.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사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년도)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최초임원의 임기) 공사의 최초 임원의 임기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기산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공사의 예산이 확정될때까지의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경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②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직제규정, 보수규정 및 제규정과 금고의 지정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설립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는 설립일부터 1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98. 2.13>

이 정관은 199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8.17>

이 정관은 1998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8.31>

이 정관은 199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0.31>

이 정관은 199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2.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 정원 중 금회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원1명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99. 8.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개정 전에 임명된 전문직 부사장의 임기는 계약기간 만료까지로 한다.
② 기구조정으로 인한 정원 외 현원은 결원이 발생될 때까지 현원으로 본다.

부 칙<99.11.11>

이 정관은 199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0. 3.31>

이 정관은 200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0. 9.28>

이 정관은 200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2. 1. 2>

이 정관은 200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2. 2. 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정관개정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무역부 조직 및 인원 6명은 본 정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02.12. 4>

이 정관은 2002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3. 1. 2>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3. 3.13>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 1.13>

이 정관은 2003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4. 3. 4>

이 정관은 200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4. 7. 7>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11. 2>

이 정관은 2004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5. 1. 5>

이 정관은 2005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5. 4. 6>

이 정관은 2005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5. 8.18>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6. 3.20>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6. 9.19>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7. 2. 2>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7. 9. 28>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7. 12. 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정비) 다른 사규상의 “경기지방공사”는 “경기도시공사”로 한다.

부 칙<08. 11. 1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8. 12. 18>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9. 2. 2>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9. 5. 28>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9. 7. 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1. 25>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3. 3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7. 27>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10. 13>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09. 0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11. 28>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12. 05>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6. 21>

이 정관은 201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11. 29>

이 정관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4. 5. 2>

이 정관은 2014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4. 11. 12>

이 정관은 2014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5. 12. 31>

이 정관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6. 8. 3>

이 정관은 2016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7. 11. 1>

이 정관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 3. 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조직) 교통본부 운영을 위하여 1본부 별도 조직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둔다.

부 칙<19. 5. 8>

이 정관은 201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 8. 26>

이 정관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 9. 27>

이 정관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 7.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다른 사규에 명시된 법인명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기도시공사”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한다.

부 칙<21. 1. 20>

이 정관은 2021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1. 7. 30>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2. 1. 27.>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2. 6. 3.>

이 정관은 2022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2. 8. 1.>

이 정관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25조 제3항 관련)】<삭제 14.11.12>

【별표 2(제25조 제3항 관련)】<삭제 14.11.12>